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교육생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장



1. 과 정 명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

2. 시행일정 : 2024. 7. 5.(금) ~ 11월 말 (176시간)

(금 19:00~23:00, 토 10:00~19:00(또는 9:00~18:00))

* 강의시간표는 추후 공지 예정

* 교육일정은 교육기관 및 강사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교육장소(강의실/ 실습장 구분)

가. 주소 : (강의실)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농생대 3호관 3113호

(실습장)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환경소재공학과

공장동 206호, 207호 및 유성구청, 목공공방

*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ZOOM 등)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음(추후 공지)

나. 연락처 : 042-821-8775

다. 교통편 : 자가, 시내버스 108번, 48번

4. 모집인원 : 20명 내외

5. 신청방법 및 선정

가. 신청기간 : 공지일 ~ 2024. 6. 30.(일)

나. 신청서 제출

1) 제출서류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신청서, 교과목 면제 관련 증빙서류*

※ 학력사항 증빙서류(졸업증명서), 국가/민간 자격증, 경력 확인서(서식참조) 등

2) 제출처 : edu-wood@kwprc.org (문의처 : 042-821-8775)

3) 제출방법 : 이메일

라. 선정방법 : 선착순 접수순으로 모집/신청자 일괄접수 후 면제분야

(목재교육개론/목재교육실무/목재교육방법론)를 고려한 교육기간 배정

마. 선정결과 공지 일정 및 방법 : 7월 3일(수) 홈페이지 공지 / 선정자 개별 연락 공지

7.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 기준

가. 교육과정

과정	교과목	세부교과목	교육시간		
			합계	강의	실습
			176	92	84
목재교육개론	목재교육입문	정책과 제도	2	2	
		목재와 문화	2	2	
		산림과 목재	2	2	
	목재교육전문가 일반	목재교육 전문가론	2	2	
		목재교육 경영론	3	3	
	목재과학	목재특성	14	10	4
		목재가공	8	8	
		목재이용	6	6	
	계		39	35	4
목재교육실무	제도의 이해	제도 기초	5	3	2
		투시도법	5	2	3
		도면의 표시	6	2	4
		재단도면계획	2	1	1
	목재가공 실무	측정 및 표시공구	2	1	1
		수공구	9	3	6
		전동공구	9	3	6
		목공기계	4	2	2
		마감기법	6	2	4
	목재가공 실습	목재가공실습 I	12	2	10
		목재가공실습 II	12	2	10
		종합실습	12	2	10
	목재가공 안전	작업안전	2	2	
		실습실 안전	2	2	
	계		88	29	59
목재교육방법론	교육과정	목재교육정의	2	2	
		목재교육과정설계	4	1	3
		교재개발	4	2	2
	교수학습	교육철학	2	2	
		교수학습모형	2	2	
		실기교육방법론	3	3	
		직업 및 진로지도	3	3	
	수업설계	교수설계의 이해	2	2	
		수업매체활용	3	1	2
		수업지도안 작성	8	1	7
		실습장구성	1	1	
		사례분석	2	1	1
	평가	평가관	1	1	
		평가의 절차와 종류	2	1	1
		사례분석	2	1	1
	계		41	24	17
안전	응급처치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8	4	4

나. 교육방법 : 강의 및 실습

다. 자격취득 기준 : 목재교육 전문과정 총 교육시간(176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로(단 일부 교과목을 면제받는 자는 면제받은 교과목을 제외한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로), 목재교육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구분	평가 방법	이수기준
출석률	출결 관리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 출석 ※ 교과목 면제대상자는 면제받은 교과목을 제외한 교육시간의 8할 이상
자격시험	필기 시험	과목(목재교육개론, 실무, 방법론)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8. 교육비 및 면제 기준

가. 교육비 : 부가세 포함 **2,167,000원**

나. 교과목 면제에 따른 교육비 면제기준

- 면제 교과목 : 목재과학 / 목재가공실무 / 교수학습 및 수업설계
- 1과목 면제시 : 40만원 면제 (부가세 포함 **1,767,000원**)
- 2과목 면제시 : 65만원 면제 (부가세 포함 **1,517,000원**)
- 3과목 면제시 : 90만원 면제 (부가세 포함 **1,267,000원**)

다. 결제 방법 : 카드결제, 계좌이체

라. 환불 규정 : 수강료 환불 규정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수업 취소 및 환불규정 적용.

- 교육 개강 전 : 전액 환불
- 총 교육기간의 1/3 경과하기 전 : 수강료의 2/3에 해당되는 금액 반환
- 총 교육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수강료의 1/2에 해당되는 금액 반환
- 총 교육기간의 1/2 경과한 이후 : 수강료 반환 불가

9. 결격사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6(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목재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처 :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 (Tel; 042-821-8775)

붙임. 목재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신청서 1부. (서식3)

경력 확인서 1부. (서식4)

< 서식 3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성명 (영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0 (※ 단체보험 신청 시 활용됩니다.)								
	주소									
	연락처									
	전자메일									
	직장명 / 직위									
교과목 면제 여부	면제 과목		보유 자격							
	☐ 목재과학 ☐ 목재가공실무 ☐ 교수학습, 수업설계		☐ 관련 자격증							
			☐ 경력							
최종학력 사항	기간	학교명	학과명	학위구분						
	0000. 00. 00. ~ 0000. 00. 00.									
관련경력 사항	기간	경력사항								
	0000. 00. 00. ~ 0000. 00. 00.									
본 기관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table border="1"> <tr> <th>항 목</th> <th>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th> <th>보유기간</th> </tr> <tr> <td>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자메일, 자격증빙서류 등</td> <td>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td> <td>3년</td> </tr> </table> 1.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의 교육과 실습 및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이 제출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양성과정 교육 중 주최 측에서 활동사진이 촬영될 수 있으며, 이를 홍보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상기 본인은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 목재교육전문과 양성과정을 수강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날인)					항 목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자메일, 자격증빙서류 등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3년
항 목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자메일, 자격증빙서류 등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3년								

〈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면제 구분 〉

1. 「고등교육법」제35조에 따라 목재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목재과학	28시간
2. 「고등교육법」제50조에 따라 목재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 임산가공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목재과학	28시간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목공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목재가공실무	30시간
5.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목공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목재가공실무	30시간
6. 「고등교육법」제35조에 따라 교육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교수학습, 수업설계	26시간
7. 「고등교육법」제50조에 따라 교육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수학습, 수업설계	26시간

비 고

1. 목재관련 학과는 임산공학과, 목재종이과학과, 산림과학부(환경재료과학전공) 등 목재관련 교과목이 개설된 학과를 말한다.
2. 목공 관련 국가자격이란 목공예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가구제작산업기사, 건축목공기능사, 건축목공산업기사, 실내장식기능사, 건축목공 기능장, 문화재수리기술자(소목, 건축) 등을 말한다.
3. 다음 표에 따라 세부 교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학위 증명서, 교과목 이수확인증, 관련 분야 종사 경력 등)를 제출해야 한다.

< 서식 4 >

경력 확인서(안)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전 자 메 일	
경력사항	기 관 명	
	지 위 / 직 급	
	재 직 기 간	. . ~ . . 까지(년 월)
	활 동 내 용	
	경력 인정 기간	※ [표1]의 경력기간 산정방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기간

위와 같이 신청인의 경력사항을 확인합니다.

확인일 : 2024년 월 일

확인 기관 : (인)

[표 1. 경력기간 산정방법]

1. 연속된 경력기간 산정방법

가. 주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 100% 경력 인정(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1일 근무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합산할 수 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주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text{주근무시간 40시간 미만의 근무월수} \times \frac{\text{주근무시간}}{40} = \text{인정 월수}$$

2. 불연속 경력기간 산정방법

가. 일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날에 대하여는 100% 경력 인정(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날 있는 경우에는 최대 8시간까지 합산이 가능하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일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text{일근무시간 8시간 미만의 근무일수} \times \frac{\text{일근무시간}}{8} = \text{인정 일수}$$

다. 인정 일수에 따른 인정 월수의 산정

$$\frac{\text{인정일수}}{25} = \text{인정 월수}$$

※ 비고

- 제1호의 “주근무시간”이라 함은 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 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 제2호의 “일근무시간”이라 함은 일 8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 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 경력기간 산정방법은 제1호의 연속된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1호의 산정방법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제2호의 불연속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산정결과는 12개월을 1년으로 본다.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산정결과는 합산이 가능하다.
-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경력은 누적 합산이 가능하다.